

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KATS)과
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표준원(ESA) 간
표준화, 인증, 적합성평가, 기술규제 관련
협력에 관한 양해각서

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의 표준원 (이하 "양측"이라 칭함)은,

품질 향상, 생산 효율성 그리고 무역에 대하여 표준화, 인증, 적합성평가, 기술규제의 기여도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, 각국 경제에서 양 기관의 역할을 인지하며,

평등과 상호이익을 기초로 하여 표준화, 인증, 적합성평가, 기술규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를 희망하며,

이와 같은 협력이 양국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고, 양측의 우호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을 인식하여,

다음과 같이 합의한다:

제1조

목 적

양측은 본 양해각서의 조항과 양국의 법령과 규정에 따라 평등과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표준화, 인증, 적합성평가, 기술규제 분야의 협력을 지원한다. 본 양해각서는 국가법 또는 국제법상 어떠한 법적 의무도 야기하지 않는다.

제2조 협력 방법

본 양해각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 방법은 특히, 다음을 포함 한다:

- 가. 기술 자료, 정기간행물, 정보 및 경험의 교류
- 나. 필요 시, 장·단기 방문,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의 교류를 포함하여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
- 다. 회의, 심포지엄, 워크숍, 전시회 및 기타 상호 관심이 있는 관련 활동의 조직 및 참여
- 라. 지역 및 국제표준화기구 내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 및 활동에 대한 상호 협력
- 마. 표준화, 인증, 적합성평가, 기술규제 분야에서의 능력 배양을 위한 공동 훈련/교육 프로그램 운영
- 바. 양측이 동의한 기타 협력

제3조 재정 협약

본 양해각서 하에서 협력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양측이 상호 합의한 조건과 양국의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부담한다.

제4조 비밀유지

본 양해각서 하에서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기인하는 모든 정보는 양측의 동의 없이 상업적 또는 산업적 목적을 위해 공개해서는

아니 된다.

제5조 추가 협약

본 양해각서의 규정은 필요 시, 양측이 서명한 추가 협약 그리고/또는 회의록에 의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.

제6조 의견차이 해결

본 양해각서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된 의견 차이는 양측의 상호 협의와 협상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.

제7조 최종조항

1. 본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, 서명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.
2. 본 양해각서 조항은 양측의 상호 서면 동의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.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된 서면 제안을 통해 개정을 시작할 수 있다.
3. 본 양해각서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예정된 종료일의 최소 6개월 이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사전 통지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.
4. 양측이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, 본 양해각서 종료 이전에 본 양해각서에 의해 시작된 협력활동 또는 프로젝트의 완료는 본 양해각서의 만료 또는 종료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.

본 양해각서는 2019년 8월 26일 서울에서 한국어, 영어로 각 2부씩 서명하였으며, 모두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.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, 영어본이 우선한다.

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
국가기술표준원을 위하여

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
표준원을 위하여

성 윤 모
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성윤모



혁신기술부 장관
게타훈 메쿠레아